산학연총괄기업지원센터 운영규정

제 정 2018. 9.
개 정 2022.10.
개 정 2023. 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산학연총괄기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2.10.13.)

제2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(개정 2022.10.13.)

1. 산학협력 및 LINC 3.0 사업 관련 기획 총괄 및 지원
2. ICC 운영을 통한 산학협력체계 구축 및 브랜드화
3. 산학공동연구 및 기술개발
4. 특허관리, 기술이전 관리, 기술지주회사 설립
5. 공유·협업 플랫폼 구축 및 운영
6. LINC 3.0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
7. LINC 3.0 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성 및 운영
8. 그 밖에 센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3조(조직) ①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 산하에 다음 각 호의 ICC를 둘 수 있다.(개정 2022.10.13.)

1. Smart Rail ICC
2. Smart Technology ICC
3. Smart Sevice Industry ICC
4. 사업단장이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센터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(신설 2022.10.13.)

1. ICC 운영위원회
2. ICC 평가위원회

③ 제1항의 각 ICC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, 센터장은 본 대학 교원 또는 외부인사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23.03.08.)

제4조(센터장) ①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산학협력중점교수 및 행정인력) 가족회사 관리와 운영,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에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행정인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본교 지원금,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